

# 양 천 구

## 주 의 요 구

**제 목** 공사 4대보험료 정산 소홀

**관 련 기 관** 서울특별시 양천구 ◻◻과

**내 용**

### 1. 업무개요

◻◻과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계약 및 관리·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은 발주자가 도급업체의 보험료 부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 아울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·건강보험·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 지출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. 또한,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,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.

아울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6조는 계약당사자가

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은 검사 과정에서 계약 위반 또는 부당 사항 발견 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공사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 청구 시 산재보험료·고용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내역 및 증빙자료(전자세금계산서, 집행사진 등)를 제출받아 그 진위와 사용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며, 부당 청구 금액은 감액·정산하거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◆◆과는 ‘안양천 물놀이장 안전관리 용역’ 대가 지급 과정에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지급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. 또한 국민연금보험료,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 실제 납부·지출 금액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제경비 정산 및 검증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[표] 공사 제경비 정산 소홀 내역

용역명	계약일 (준공일)	부적정 내역
○○○ 물놀이장 안전관리 용역	23.06.30. (23.09.13.)	· 고용·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부존재 · 건강·연금보험 미정산

### 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◆◆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### 5. 조치할 사항

#### ◆◆과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공사 대금 지급 시 제경비 정산 및 증빙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